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40953(본소), 2019나40960(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 · 부속물매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영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현정

변론 종결 2020. 7. 10.

판결 선고 2020. 8. 11.

제 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219669(본소), 23327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주차장 67.25㎡, 근린생활시설 43.35㎡)를 인도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현저히 높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안동범, 판사 허명욱

별지

부동산 목록

1. 건물의 표시

서울 마포구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67.25㎡(주차장)

1층 43.35㎡(근린생활시설)

2층 93.10㎡(주택2가구)

3층 93.10㎡(주택2가구)

4층 84.72㎡(주택1가구)

지층 129.60㎡(교회)

